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유용원·김미애·김성원
김소희·강선영·윤영석
김재섭·임종득·이현승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,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운영이 저해되고,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, 기관장이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,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).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”으로, “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연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기관장이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관장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하여도 적용

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③ (생 략) ④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 로 하되, <u>사업성과의 평가 결과</u> <u>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 위로 채용기간을 <u>연장할 수 있</u> <u>다. <단서 신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 <u>을 모두 충족하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연장하여야</u> <u>한다. 다만, 제2호를 충족하지</u> <u>못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지</u> <u>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</u> <u>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1.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</u> <u>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2. 기관장이 신체 · 정신상의 이</u> <u>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</u> <u>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</u> <u>우</u>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